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24호 2014. 5. 14. (수)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27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정선군 규칙 제1228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11
- 정선군 규칙 제1229호 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2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7, FAX:560-2592)

규 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선군수 권한대행

정선부군수



2014년 5월 14일

정선군 규칙 제1227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징계기준및 별표1의2”를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력하고”를 “주력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처리 될”을 “처리될”로 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별표1적용”을 “별표 1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가 경”을 “정도가 약”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성매매에”를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 행정기관장인”을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인”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으로, “후부터 1년이내”를 “후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이유난”을 “이유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별표4와별표5”를 “별표 4와 별표1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라”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의결등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표 4로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액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된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음주운전 마.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별표 1의2과 같음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비고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징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 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교

-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계)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별표 4]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7조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개 정 이 유

- 안전행정부 소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중 공금횡령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금액을 반영하고, 성폭력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및 징계경감 제외대상에 성희롱을 추가함으로써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의 경우 중징계 금액기준 추가(안 제2조제1항)
-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및 징계감경 제외대상 추가(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
-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선군수 권한대행

정선부군수



2014년 5월 14일

정선군 규칙 제1228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연출단장”을 “연출감독”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급여지급 등)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급여 지급에 대한 상임단원의 연봉, 단원의 수당(출연료), 보상금, 여비 및 상임단원의 성과금의 지급기준 등은 각각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성과금은 직책별 구분에 따른 성과금에 전년도 근무평정표와 단원고과기록표를 반영한 성과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그 다음 연도 상반기에 지급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에 의한 공개전형”을 “제6조제2항에 따른 일반 공개모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합격한 자”를 “합격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면접에 의한”을 “면접시험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단원채용의 우선순위)”를 “(단원채용의 우선 순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원신규 채용시 동등이상의”를 “단원 신규 채용 시 동등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근 3년 이내 각종 아리랑 경창대회 상위 입상자
2. 정선아리랑 전수체계상 조교
3. 정선아리랑 전수체계상 이수자
4. 정선아리랑 전수체계상 장학생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연관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받는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받은 관람료는 정선군 수입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공연료의 징수)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공연료를 받는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부터 7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원의 구성 및 정원(제2조 관련)

구 분	구 성					비 고
	계	소리	극	국악	기타	
계	50	18	18	6	8	
연출감독	1				1	
작 가	1				1	
지도위원	4				4	
안 무 가	1				1	
단 무 장	1				1	
수석단원	3	1	1	1		
차석단원	3	1	1	1		
평 단 원	16	4	8	4		
비상임단원	20	12	8			

[별표 1의2]

상임단원의 연봉기준(제5조 관련)

구 분	연 봉 기 준	비 고
연출감독	40,000,000원 ~ 60,000,000원	
작 가	35,000,000원 ~ 50,000,000원	
지도위원	26,000,000원 ~ 40,000,000원	
안 무 가	28,000,000원 ~ 40,000,000원	
단 무 장	26,000,000원 ~ 40,000,000원	
수석단원	26,000,000원 ~ 40,000,000원	
차석단원	24,000,000원 ~ 35,000,000원	
평 단 원	22,000,000원 ~ 35,000,000원	

[별표 2]

단원의 수당(제5조 관련)

□ 출연료 및 연습비

명 예 단 원		비상임단원		단원(공통)
3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연습비
200,000원	180,000원	150,000원	120,000	60,000원

비고

1. 위 표에서 3년 이상, 3년 미만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연습비는 명예단원과 비상임단원이 연습에 참여 할 경우 지급되며, 근무시간 외 연습을 할 경우에는 연습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별표 3]

보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적 용 분 야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작 품 료	어문저작물의 희곡 각색료	작품당	1,000~5,000	
	관현악합주곡 작곡	1곡(30분 내외)	1,000~5,000	
	독·중주곡 작곡	10분 내외	500~3,000	
	국악 편곡	10분 내외	500~3,000	
	무용 창작	10분 내외	500~2,000	
	무용 편곡	1작품	500~2,000	
객 원 출 연 료	특별출연 A급	1회	600~1,500	
	특별출연 B급	1회	300~600	
	특별출연 C급	1회	150~300	
	일반객원출연 및 연습	1일	50~120	
	※ 유명연주자 및 공연자와 협연시 상호약정에 의한 실비보상			
공연보조	도안, 조명, 음향기사	1회	300~1,000	
	소품 운송, 홍보 등	1회	50~200	
	사진 촬영 등	1회	300~1,000	
기 타	원작 사용료	작품당	1,000~10,000	

비고: 객원 출연료 보상 기준

- A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B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
- C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장학생
- 일반 객원 출연 및 연습: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미만인 사람

[별표 4]

예술단원 여비 지급기준(제5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연출감독 . 작가 . 지도위원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안무가 . 단무장 . 수석 . 차석 . 평단원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비상임단원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별표 5]

성과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직책별 구분에 따른 성과금

구 분	성 과 금	비 고
연 출 감 독	3,000,000원	
지 도 위 원	2,500,000원	
안 무 자	2,500,000원	
수 석 단 원	2,500,000원	
차 석 단 원	2,000,000원	
평 단 원	2,000,000원	
서 무 단 원	2,000,000원	

2. 성과금 지급률

구 분	지 급 률	비 고
100점 ~ 96점	100%	※ 구분은 직책단원 근무평정표와 단원고 과기록표에 따라 산 정된 점수
95점 ~ 90점	90%	
89점 ~ 80점	80%	
79점 ~ 70점	70%	
69점 ~ 60점	50%	
59점 이하	30%	

[별표 6]

관람료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1회당 기준 시간(분)	
	60분 미만	60분 이상
소리, 국악 2개 부문 공연	10,000원 ~ 15,000원	20,000원
극, 국악 2개 부문 공연	10,000원 ~ 15,000원	20,000원
정선아리랑극 공연	정선아리랑상품권 1인 5,000원	정선아리랑상품권 1인 10,000원

비고

1.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은 50퍼센트를 할인한다.(정선아리랑극 공연은 제외)
2.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경우 20퍼센트를 할인한다.(정선아리랑극 공연은 제외)
3. 상기 1과 2의 할인 사유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정선아리랑극 공연의 경우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소지자에 한하여 관람할 수 있다.

[별표 7]

공연료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공 연 료	비 고
독창/독주	200,000원 ~ 400,000원	-
5인 이상 10인 미만	1,000,000원 ~ 2,000,000원	연주자 5인 포함
10인 이상 20인 미만	2,000,000원 ~ 3,000,000원	“
20인 이상 30인 미만	3,000,000원 ~ 4,000,000원	“
30인 이상 50인 미만	4,000,000원 ~ 5,000,000원	“

비고

1. 출연인원 및 추가 소요경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2. 1일 이상은 공연료와 숙박비 등 별도 협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축 장

주소(또는 소속) :

성 명 :

귀하를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20 . . . ~ 20 . . . (2년간)

20 . . .

정 선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위 축 장

주소(또는 소속) :

성 명 :

귀하를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
○ 단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20 . . . ~ 20 . . . (2년간)

20 . . .

정 선 군 수



제 안 이 유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개정(2014. 3. 12.)됨에 따라 단원들의 급여지급 등의 지급 기준, 단원채용, 공연관람료 및 공연료 징수방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급여와 각종 수당 등의 지급기준 보완(안 제5조)
- 단원채용의 우선순위를 지역 현실에 맞게 보완(안 제6조 및 제7조)
- 공연 관람료 및 초청공연료 징수 기준 마련(안 제8조 및 제9조)
-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선군수 권한대행

정선부군수



2014년 5월 14일

정선군 규칙 제1229호

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소 의 운영에 관 하여”를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술교육반 편성) 기술교육반은 기술지원 과장 1명, 농업기계 담당 1명, 교관 1명, 교육반원 1명 내지 2명, 운전원 1명을 포함하여 1조를 편성한다.

제3조의 제목 “(수리절차)”를 “(기술교육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기계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을 “농업기계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수리”를 “기술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기술교육은 읍·면·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결하여 교육하는 것이 부적절한 농기계 및 오지부락에 대하여는 현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수리”를 “기술교육”으로, “발급한후”를 “발급한 후 그”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입시의 가격으로”를 “구입원가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를 “부품대금은 구입원가로 영수하며”로, “수리 용역만을 담당한다”를 “기술교육만을 실시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리소에는 다음 각호”를 “기술교육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기계 기술교육 신청서 및 영수증(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2호 중 “부속품”을 “순회기술교육 부속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구대장”을 “장비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속품 구입원가 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5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안 이 유

- 「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2013. 12. 23.)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명 변경 : “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농기계 용어 변경 :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변경
- 수리 용어 변경 : “수리”를 “기술교육”으로 변경
- 장부의 서식 변경과 전산서식으로 대체 가능함을 규정(안 제5조)